



시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생활정치 구현

의안번호

제21호

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김종욱 의원 등 5명
제출연월일	2026. 2. 9.

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1호
----------	------

발의연월일: 2026. 2. 9.

대표발의자: 김종욱

공동발의자: 민병춘, 홍태의
이태모, 윤금숙

1. 제안이유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결과를 향후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안 제3조)
- 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안 제5조)
- 다. 회원 등록 및 임기(안 제6조)
- 라.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안 제10조)
- 마. 경비 지원(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제1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60조

나. 조례안예고: 2026. 2. 9. ~ 2. 14. (5일간)

□ 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논산시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방재업무 담당부서에 “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제시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
자문
3. 그 밖에 재해원인의 조사 등을 위하여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재난업무 부서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재난업무 국장으로 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난업무 팀장이 된다.

③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에 재난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가 관 및 단체로 구성한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5조(협의회의 운영)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또는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회의 개최 또는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동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한다.

5. 세부 운영계획: 운영 및 회원의 역할 등에 관해서는 회장이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회원등록 및 임기) ① 회원의 등록(변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② 회원의 임기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해촉) 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을 원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으로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원의 직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
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9조(현지 조사 업무)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따른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지역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개최 및 서면동의) ① 회장은 제3조 및 제9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경비 지원) 협의회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수당·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4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논산시의회	김종욱 의원 등 5명

별지 제1호서식

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등록(변경) 신청서

회원번호		희망업무 분야	<input type="checkbox"/> 예방	<input type="checkbox"/> 대비·대응
접 수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복구	<input type="checkbox"/> 정책관련

개인·기관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위 및 성명			
주소 : (-)	전화 : ()		
	팩스 : ()		
이 메 일 :			
홈페이지 :			
담 당 자	직 위	연락처	사무실 :
	성 명		휴대폰 :
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			

위 개인·기관(단체)은 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변경)하고자 「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 :

인

논산시 제○○호

회 원 증

개인 ·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사 업 자 등록번호) :

주 소 :

위 개인·기관(단체)은 「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회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접 조사·분석·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의 발생원인 조사 등을 할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②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③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각각 시·군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④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가 각각 시·군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22., 2016. 1. 27., 2017. 10. 24.>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2. 2. 22., 2016. 1. 27., 2017. 10. 24.>

⑥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의 범위 및 그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2016. 1. 27.,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3. 7.][제목개정 2017. 10. 2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4. 12. 30.>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

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

③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2025. 4. 1.>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2025. 4. 1.>

⑤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2025. 4. 1.>

[전문개정 2013. 8. 6.][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삭제 <2013. 8. 6.>]